

Yale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회칙

Yale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회칙을 2022-2023 임원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다.

제 1 장 총강

제 1 조 (명칭)

본회는 Yale Korean Graduate Student Association (이하 본회)라고 칭한다. 약자로는 Yale KGSA 또는 KGSA 를 사용한다.

제 2 조 (목적)

본회는 한국의 문화, 정서적 교류를 통해 Yale 내 한인 대학원생 및 연구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타 한인 조직과의 교류함양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공식 언어)

본회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, 공식 문자는 한글로 한다.

제 2 장 회원

제 4 조 (회원)

본회의 회원은 Yale 재학 대학원생 및 현직 연구원 중 본인을 한인으로 정의하여 해당 학기 혹은 academic year (이하 년도)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 한다. 회원의 자격은 각 학기 혹은 년도에 갱신되며, 그 과정에서 필요시 회원비가 있을 수 있으며 회원비의 환불은 불가할 수 있다.

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제 1 항 본회의 회원은 KGSA 내 행사 및 본회의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 2 항 본회의 회원은 해당 academic year 본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거의 선거권을 동등하게 가진다. 피선거권은 “제 16 조”에 근거하여 갖는다.

제 3 항 본회의 회원은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강요도 받지 아니한다.

제 4 항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한다.

제 3 장 회장

제 6 조 (회장의 지위)

회장은 본회의 대표의 역할을 한다.

제 7 조 (회장의 임기)

회장의 임기는 매년 6 월 1 일부터 다음해 5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8 조 (회장의 권한 및 책임)

제 1 항 회장은 임기에서 첫 정규 학기 시작 전 구성된 “제 4 장”의 본회 임원진을 구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그 방식은 회장의 재량으로 한다.

제 2 항 회장은 회원의 행사 참여를 독려하되, 강요하지 못한다.

제 3 항 회장은 그 외 임원의 모든 업무를 이해하고 감사, 관리 및 지원한다.

제 4 장 임원진

제 9 조 (임원의 지위)

임원진은 본회의 운영 기구로서 각 구성원을 임원이라 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업무 및 권한)

임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한다. 회원 5 인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은 임원진 의안으로 상정하여 심의 후 회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한다.

제 11 조 (임원진의 구성)

임원진은 회장과 회장이 아닌 총무를 포함하여 2 인 이상으로 한다. 임원은 회장의 재량으로 구성하되,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장은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기 전 이를 모든 회원에게 공포하여야 함으로써 각 회원이 임원진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
제 13 조 (탄핵)

제 1 항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의무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, 회장을 포함한 임원 3 인의 제소를 통하여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.

제 2 항 회장이 의무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,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의 제소를 통하여 회장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.

제 3 항 탄핵 소추된 임원은 회원 전체 투표를 통하여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탄핵된다.

제 4 항 탄핵된 임원의 자리는 임원 중 한 명이 임시로 그 역할을 대리한다.

제 5 항 회장의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“제 5 장”의 조항을 따라 선거를 실시한다.

제 5 장 회장 선거

제 14 조 (선거)

본회 회장 선거는 선거의 대원칙을 준수하여 4, 5 월 중 해당 년도 임원진이 공포, 선거의 진행 및 집계 등을 총괄한다.

제 15 조 (선거권)

본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해당 년도 회원 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있다.

제 16 조 (피선거권)

본회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은 해당 년도 회원 자격이 있었던 자로서 선거의 대상이 되는 해 Yale 에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에게 있다.

제 17 조 (선거의 운영 및 진행)

제 1 항 본회 회장 선거는 대면으로 진행하고, 선거의 대원칙을 준수하며 임원은 선거 감독의 역할을 한다. 단,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대면 선거가 불가할 경우 비대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2 항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하며, 후보자가 1 인일 경우 전체 투표수의 절반 이상의 찬성 표를 얻을 때에 당선이 인정된다.

제 3 항 최다득표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하여 선거를 반복한다.

제 6 장 재정

제 18 조 (재원)

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금으로 집행하며, 기업 및 개인 후원금, 학교 지원금, 회원비를 포함한다.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 19 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그 해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.

제 20 조 (예산)

회원비 산정과 예산의 집행은 임원진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, 예산의 관리는 임원 중 “제 11 조”의 총무가 담당한다.

제 21 조 (결산)

임원진의 임기 중 5 월, 12 월에 결산안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, 이 밖의 기간에도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임원진은 회계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7 장 회칙의 개정

제 22 조 (개정안의 발의)

회칙 개정안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 3 인, 회장을 포함하지 않은 임원 4 인, 또는 본회 회원 10 인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.

제 23 조 (개정안의 공고)

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그 내용을 회원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의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회장을 통해 설명과 함께 공고되어야 한다.

제 24 조 (임원의 의결)

회장은 회칙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임원을 소집하여 의결하여야 하는데, 그 의결에는 발의자를 제외한 임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제 25 조 (회원의 투표)

회장은 임원으로부터 의결된 회칙 개정안에 대해 의결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를 진행하며, 투표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따라 회칙은 개정된다.

제 26 조 (회칙의 공포)

회칙이 개정된 날로부터 2 일 이내로 회장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27 조 (임원의 임기에 대한 회칙 개정)

임원의 임기 연장을 위한 회칙 개정은 그 회칙 개정 제안 당시의 임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회칙은 2022 년 9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회칙 해석)

본회의 존립 등 본회와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회칙해석에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임원진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.